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33
------------	------

2017. 11. 2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10. 16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 10.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11.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제안이유

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등 주거 복지사업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현재 10개 주거복지 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나. 센터별 2명의 근무자가 2~3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과 센터 접근성이 떨어져, 센터 미설치 자치구의 경우 또 다른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1자치구 1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5개 센터를 증설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촘촘한 서비스

제공과 시민 접근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시행사무의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주거복지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센터의 설치), 제21조(관리 및 운영)
- 주거복지센터 확대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17.9.7)

○ 추진 필요성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간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고,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및 전달체계의 강점과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월세, 보증금, 연료비, 집수리 등 직접지원
- 주거복지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 지역특성을 살린 센터별 특화사업 추진
-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주거권 교육 및 주거상담 등

라. 신규위탁 규모 : 15개 센터(사무형 민간위탁)

구 분	센 터 명
신 설 (15)	중구, 동대문, 광진, 종로, 도봉, 중랑, 마포, 용산, 구로,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강동
기 존 (10)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 성동

마. 민간위탁기간 : 1년 10개월(2018.3.1.~2019.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격 :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8년도 소요예산 : 1,249,995천원 ('18.3월~, 10개월분)
- 산출근거 : 83,333천원×15개 센터

※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급기준 준용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22조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4. 검토보고의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동의안은 2013년 12월부터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등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10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를 25개 센터로 확대하여 그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¹⁾를 구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센터의 민간위탁은 「주거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 촉진을 위해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설치 및 운영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센터의 민간위탁을 2013년 12월부터 시행하여 현재는 10개소의 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센터에 대한 그간의 평가 결과처럼 10개소의 센터와 근무인력(센터당 2명)으로는 서울시 전 지역에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²⁾가 있음.
- 따라서 금번 위탁동의안은 10개소의 센터를 25개소로 확대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센터별 1개 자치구 책임 관리로 촘촘한 지역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과 시민 접근성 향상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한편, 2018년 25개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 편성예산은 22억 5천만원('17년 10개소 민간위탁금은 7억 7천만원)으로 센터별 평균 1억원 내외이며, 신규 15개소는 수탁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10개소는 자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종합하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센터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그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민간 등의 전문성과 조직·인력, 축적된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

2) 센터별로 2~3개구를 관할하지만, 실제로 센터가 소재한 자치구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비율이 각각 77%, 83%에 달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음.

- 다만, 우리위원회 민간위탁 실태점검 소위원회 활동(2016. 12. 20~2017. 3. 19)결과³⁾ 나온 개선사항과 같이 수탁기관 선정시 선정위원의 전문성 및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독립적인 사무공간 및 직원의 전문성, 사무실 접근성 등을 고려한 위탁기관 선정, 위탁 이후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평가 및 시 차원의 인건비 현실화 노력, 상담사례의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져 형식적·외연적 확대가 아닌 내실있는 센터의 체계 및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동의(출석위원 전원찬성)

- 의견 :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주거기본법」 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로 지정하고, 25개 주거복지센터는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로 지정하며, 민간위탁기관 선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3) 우리위원회 민간위탁 실태점검 소위원회 활동(2016. 12. 20~2017. 3. 19)결과 및 2017년 사회복지센터 평가(17.8.28~9.1)결과에도 포함된 내용임. 소위원회 활동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① 평가방법 및 모니터링 부재 ② 지원 대기명부 불비 및 주거복지지원의 연속성 결여 ③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정립 ④ 근무인력의 전문성 결여 및 상담인력 부족 ⑤ 상담 등 사례관리 부실 ⑥ 운영 및 업무매뉴얼 부재 ⑦ 상근인력의 열악한 처우 ⑧ 센터의 접근성 부족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33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현재 10개 주거복지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나. 센터별 2명의 근무자가 2~3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효율성과 센터 접근성이 떨어져, 센터 미설치 자치구의 경우 또 다른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다. 이에, 1자치구 1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5개 센터를 증설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촘촘한 서비스 제공과 시민 접근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시행사무의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주거복지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센터의 설치), 제21조(관리 및 운영)

- 주거복지센터 확대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17.9.7)

○ 추진 필요성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간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고,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및 전달체계의 강점과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월세, 보증금, 연료비, 집수리 등 직접지원
- 주거복지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 지역특성을 살린 센터별 특화사업 추진
-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주거권 교육 및 주거상담 등

라. 신규위탁 규모 : 15개 센터(사무형 민간위탁)

구 분	센 터 명
신 설 (15)	중구, 동대문, 광진, 종로, 도봉, 중랑, 마포, 용산, 구로, 양천, 강서, 동작, 서초, 강남, 강동
기 준 (10)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관악, 송파, 성동

마. 민간위탁기간 : 1년 10개월(2018.3.1.~2019.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격 :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8년도 소요예산 : 1,249,995천원 ('18.3월~, 10개월분)
- 산출근거 : 83,333천원×15개 센터

※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급기준 준용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22조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 및 지역 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 작성자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이남규 (☎2133-7027)